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1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박성훈 · 송언석 · 박충권
김기웅 · 김위상 · 김성원
김승수 · 서명옥 · 윤영석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채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u>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채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채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 ----- ----- ----- ----- -- <u>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u>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채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